

전문건설업 산재 66.5%가 은폐

전문건설업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중 66.5%가 은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은 전문건설협회가 회원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산재처리실태 자료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4월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246개 현장에서 총 747건의 산재가 발생했는데, 그 중 33.5%인 250건만이 산재보험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2/3(66.5%)에 달하는 497건이 산재은폐 후 공상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에서는 매년 1,00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1년 간 발생된 산업재해에 대해 환산재해율을 산정하고 있다. 이를 건설공사 입·낙찰에 영향을 미치는 PQ(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의 신인도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범관 의원은 “공사입·낙찰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산재은폐를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제도의 근본취지인 원도급자의 자발적 재해예방 노력을 유인하는 효과는 미비하게 나타나고, 각종 불이익을 면하거나 혜택을 목적으로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폐해만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사후조치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므로, 산재예방을 위한 건설업체의 자율적인 산업안전보건 노력을 평가한 후 우수업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며 “여기에 산재발생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과 페널티를 강화하여 정책의 실효성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클린사업장 인증 기준 강화

앞으로 클린사업의 인증기준이 강화되고 개선범위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클린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내용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 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4월 13일 압록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위험요인 개선대상을 사고성 재해에서 전

체 산업재해로 변경했다. 최근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직업성 질병 등 재해유형이 다양하게 발생되는 특성을 볼 때 클린사업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법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직업성 질병재해 및 타재해도 클린사업의 지원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직업성 질병 재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는 등 근로자의 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클린 사업장의 인정기준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클린사업장 인정기준은 시설 개선에 치중하고 있고, 대다수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관리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안전보건교육, 위험기계검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업환경측정, 특수검진실시, 무재해운동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에 관련된 사항도 클린사업장 인정기준에 포함하여 시설개선 위주의 개선을 탈피하고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 무재해 시간과 일수 중 택일 가능

소규모 사업장은 앞으로 무재해 운동을 펼치면서 목표시간 또는 목표일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같은 내용의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무재해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일선기관의 의견수렴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규칙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건설업을 제외한 30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무재해 목표시간 및 목표일수를 택일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건설업에서 공사를 개시하여 준공 시까지 무재해를 달성한 경우 해당 목표 배수와 관계없이 무재해준공을 인증받을 수 있도록 새롭게 바뀐다.

건설 일용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앞으로 신규 건설 일용근로자들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4월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은 먼저 원도급자가 사업의 일부나 전문분야 공사 전체를 하도급 주는 경우에도 원도급자가 하도급 공사에 참여한 근로자의 산재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영세한 건설업체가 신규 채용된 건설 일용근로자의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건설업 차원에서 일용 근로자의 교육이 실시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건축물 등을 철거하거나 해체할 때 반드시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설계·제조 단계에서 기계·기구·설비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부가 설계·제조·수입업자에게 기술상의 지침과 작업환경의 표준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안전·보건관리 대행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빠르면 올해 안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법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건설현장 97% 법 위반 '안전불감증 심각'

건설현장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해빙기 일제점검에서 점검 대상 대부분에서 1개 이상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해빙기를 맞아 전국 793개 건설현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의 96.5%인 766개소에서 위반사항을 발견했다고 4월 3일 밝혔다. 총 적발 건수는 3,023건으로 나타났다.

점검결과, 올해에도 추락·낙하, 붕괴, 감전 등의 예방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사항을 위반한 사례는 총 2,178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72%를 차지했다. 그 뒤로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135건), 유해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미비(112건), 산업안전관리 위반(8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안전난간, 안전망, 작업발판 등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현장 30개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했고, 안전관리가 극히 불량한 12개소에는 전면 작업중지, 118개소에는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방호조치가 소홀한 위험기계 139대는 사용 중지하는 한편, 3억8,000만원의 과태료와 2,744건의 시정명령을 통해 위법사항에 대해 강력 조치했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해빙기 사고 예방을 위해 산재 위험이 예상되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해나갈 것"이라며 "관

련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되,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행정, 사법적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해빙기 점검과는 별도로 오는 5월 19일부터 산안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가 강화돼, 이에 대한 현장관계자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사항 79개 조항을 위반할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가 한층 강화된다"라고 밝혔다.

유해업무 근로자 4명 중 1명 건강이상 판정

유해업무 근로자 4명 중 1명이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2009년에 전국 산업현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4월 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유해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대상자 793,790명 중 187,703명(23.6%)이 계속적인 관찰을 요하는 요관찰자 이거나 질환유소견자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질병 요관찰자 61,104명(32.6%), 일반질병 유소견자 16,313명(8.7%), 직업병 요관찰자 105,245명(56.1%), 직업병 유소견자 5,041명(2.7%) 등이었다.

이상소견을 받은 근로자는 지난해에 비해 16,060명(7.9%)이 감소했지만, 겸진 대상 근로자 중 이상소견을 받은 비율은 전년 대비로 0.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이상소견 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발생자 수)은 2,364.6명으로 지난 2008년(2,370.3명)에 비해 5.7P가 감소해 전체적으로 작업환경이 다소나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소규모 공연장 안전관리 한층 강화될 듯

공연장 등록 대상이 객석 수 100석 이상인 공연장에서 50석 이상인 공연장으로 확대된다. 이에 소규모 공연장의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최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소규모 공연장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연장 등록 대상을 객석 수 100석 이상에서 50석 이상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공연장 안전진단 기준도 일원화했다. 지금까지는 안전진단 기준으로 객석 수와 무대 기계·기구 수를 병용했으나, 실무적으로 안전검사의 내용이 무대 기계·기구에 대한 것임을 고려하여 객석 수에 따른 기준을 삭제했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안전진단기준이 일원화되면서 객석 수는 많지만 무대 시설은 거의 없는 야외 공연장 등의 안전 진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기존에 50석에서 100석 사이의 공연장을 운영하던 사업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공연장을 등록해야 한다. ☺